

**Deloitte.**



2023.08 | 제3호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I. 전문가 기고

- ①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안전한가 • 0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udit&Assurance 본부 오정훈 파트너
- ②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 08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 II. CCG 아젠다

- ①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들의 복합적 역할 • 12
- ②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22

##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준법지원인 ·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현황 • 34
- ②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38

##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 50
- ②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 54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群) 구분 세부기준 등

## V. FAQ

- ①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58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I. 전문가 기고 ①

##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안전한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Audit&Assurance 부문 오정훈 파트너

### 서언

최근 뉴스·신문·포털 등에서 자금횡령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횡령·배임 내역을 검색하면 최근 10년간 50개 내외의 회사들이 해당 내역을 공시(표1 참조)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중 횡령·배임 내역을 검색하면 최근 10년간 평균 1개의 회사만이 해당 내역을 공시(표2 참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회사의 횡령·배임의 건수는 극도로 적어지는데 이러한 통계가 자회사의 자금통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론은 'No'이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FY22 기준 172개사)만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아닌 상장사들(FY22 기준 전체 상장사 2,493개사 중 2,321개사)은 자회사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공시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장사 중 6.9%만이 공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얼마나 많은 자회사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표 1> 주요경영사항: 횡령·배임 공시 회사 수 <sup>1)</sup>

시장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가증권	14	16	18	21	25	27	17	18	13	14
코스닥	14	18	11	16	24	31	37	34	34	36
소계(A)	28	34	29	37	49	58	54	52	37	50

<표 2>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횡령·배임 공시 회사 수 <sup>2)</sup>

시장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가증권	-	-	-	1	3	3	1	1	1	1
코스닥	-	-	-	-	-	-	-	-	-	-
소계(B)	-	-	-	1	3	3	1	1	1	1
RATIO = <표2>소계(B)/ <표1>소계(A)	-	-	-	2.7%	6.1%	5.2%	1.9%	1.9%	2.7%	2.0%

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참고

# I. 전문가 기고 ①

##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안전안가

### 해외 자회사 자금사고 유형

하기 언론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자회사에서의 자금사고는 매년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다만, 국내 상장사들의 자금사고같이 사고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주목받지 않을 뿐이다.

#### <표 3> 해외 자회사 자금사고 언론 기사 타이틀

<2023년 04월 24일: 잇따르는 A사 횡령 사건...해외 법인 파견직원 8억여원 '꿀꺽'> 3)

<2022년 10월 16일: "B사 베트남 법인 8억 3,700만원 횡령 사고...법인카드로 유희비 지출"> 4)

<2021년 04월 20일: C사 러시아법인 직원 14억 횡령 유죄 판결..."추징 진행"> 5)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자금사고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 유형1: 계좌이체/문서위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내부통제 우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오류로 가장하여 회사의 내부통제를 우회하여 소액의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흔한 유형이다. A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자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뿐 아니라 승인하는 역할, 경영진에 매일 자금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한사람이 수행하는, 이른바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진은 해당 직원의 보고서만 보고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 횡령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인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 • 유형2: 회사 자금유용

다음으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公款유용으로 회사의 공금을 부당한 방식으로 유용하는 유형이다. 법인카드 부당사용, 가공의 임직원/가공의 OT시간 기록을 통한 급여수령, 거래처와 공모하여 부당한 자금 편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B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회사 법인장이 해외자회사 자금을 임의로 출금(횡령) 후 예금통장과 잔액증명서에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 권한을 독점하는 한편,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을 은폐했다. 또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복지 수당을 수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고 유형이다.

3) 서울신문  
4) 데일리시사  
5) 머니투데이

# I. 전문가 기고 1

##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안전한가

- 유형3: 물건 판매 혹은 구매

마지막 유형은 정상적인 거래처로 위장하여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유형이다. 특수관계 거래처 혹은 공모한 거래처와 물품판매/구매를 통한 리베이트 수령을 통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흔히 발생하고 있다. 롯데제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자회사 공장 상품을 소규모 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에 판매한 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가짜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 유형이다.

### 해외자회사 자금사고, 예방이 가능한가

해외자회사의 자금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특정 프로세스를 갖추어 자금사고를 일정부분 예방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자금사고 유형별로 갖춰야 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유형1: 계좌이체/문서위조

내부통제 우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의 자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업무에 대한 인출권자, 승인권자, 보고자를 별도로 분리하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한 활동이나 이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체나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알림을 설정하여 자금계정 활동에 대한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서위조 예방을 위해서는 민감한 문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권한 없는 사람들이 문서를 열람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중요한 문서의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본을 제공하여 원천적으로 문서위조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금흐름과 회계흐름을 대사하거나, 거래처 마스터에 등록된 계좌번호 이외의 계좌로 이체되는 거래의 건의 경우 본사에서 추가로 수기로 지출처의 신뢰성을 확인 하도록 내부통제를 보완하는 방법도 자금사고(예: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자금 편취) 등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 유형2: 회사 자금유용

회사 자금유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예산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지출 사유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회사 재무 거래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할 뿐 아니라, 모든 금융 거래를 철저하게 문서화하고, 올바른 승인 및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인 프로세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내부 통제, 금융 절차, 윤리적 규범 등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금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인지시킬 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금융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모니터링한다면 해외자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 I. 전문가 기고 ①

##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안전한가

- 유형3: 물건 판매 혹은 구매

물건 판매 혹은 구매와 관련된 자금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해외자회사의 거래 파트너를 선택할 때 신뢰성, 신용도 및 업계 평판을 평가하는 등, 거래 파트너의 업적, 재무 건강상태, 그리고 과거 거래 기록을 조사하고 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상세한 계약서 작성이다. 거래 내용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측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표시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결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조치하고, 거래 및 금융 활동에 대한 외부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거래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물건 판매 혹은 구매를 통한 자금 유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결언: 자금사고는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이 중요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자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모회사의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파트너십과 투명한 거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감사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자금관련 사고유형에 초점을 둔 시나리오 점검을 통하여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은 쉬워도 이미 잃어버린 회사의 주요 자산과 대외적인 신뢰성은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모든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은 어려울 지라도 회사가 자금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만 해외자회사에 보내주어도 상당수의 자금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자금프로세스 개선의 시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호'를 사전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계열사에서는 실제로 해외자회사 자금통제가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실제 대형 그룹사의 해외자회사 자금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다 보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부분의 자금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I. 전문가 기고 ②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 서언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

2018년 주기적 지정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의 회계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장사인 O사의 대규모 횡령 등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67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횡령이나 배임은 상장회사로서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기업의 지배구조나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를 강화해야 할 감사위원회(감사)가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사외이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이었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독단으로 인한 경영 효율성 저해와 이로 인한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투자자들은 사외이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이 기업가치 증진에 부합하는지 감독하는 역할과 함께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자산 1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이사회 중 대략 50%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역할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가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주는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기업 의사결정을 제한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주주 사이의 부의 불평등한 이전에 대응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추가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가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I. 전문가 기고 2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내부통제는 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경영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위험관리 방안을 감독하여야 하므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한다.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체계에서는 내부통제의 목적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법규 준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강조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보고 및 법규 준수의 상당부분과 연관되나, 최근 횡령사고에서 보듯이 외부감사제도 도입만으로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사와 함께,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적절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부정은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관행 등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정의 동기가 생긴 경우 발생한다. 내부통제는 구축과 운용 모두 중요하며, 적절한 운용과 함께 공정한 보상과 같은 투명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사외이사의 Reporting 감독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재무제표 공시에 중요한 거짓이 있어 투자자 등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배상책임에서 면책한다. 사외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않았든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판결<sup>1)</sup>에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회사의 재무 및 손익상황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고, 그로 인해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다"는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에서 면책되었다.

여기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다는 것은 정기적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송과정에서는 비판적인 보도 자료나 부정적인 업계 동향과 같은 자료가 근거로 활용되므로 회사가 제공한 자료 이외에 입수 가능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6가합541234 판결

# I. 전문가 기고 ②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 사외이사의 Compliance 감독

다음은 법규준수(Compliance) 내부통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법규, 규정, 계약 및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재무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기업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규준수 내부통제는 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안전, 양성평등,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내·외부 약정 준수, 내부자 신고관리(Whistleblowing management systems)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최근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련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은 2021년 D사에 대한 판결<sup>2)</sup>로 법규준수(Compliance)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이다. 이 사건은 2012년 4대강사업 입찰 당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446여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판례로서, 이사들의 내부통제 및 업무집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윤리강령이나 임직원 대상 교육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이나 사전교육에 불과하며, 위법한 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감시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이사회 역할 외에도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은 지속되는 조직적인 감시 소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며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며, 사외이사들은 수동적으로 보고되는 사안만을 감독하는 것으로는 감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또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일부 이사들만이 각자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이사가 적어도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의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21.9.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 I. 전문가 기고 ②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또한 대규모 회사에서는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대표이사나 특정 이사만이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이사가 최소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의 감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조직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 이사가 모르거나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운용도 이사의 감시 의무에 포함된다고 강조하였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회사의 법규준수(Compliance) 위험이 예상되는 주요 업무나 사업에 내부통제시스템이 결여된 경우, 조직적 감시의 부재로 인해 경영진의 감시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불법 행위를 모르는 등의 이유로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Operation 감독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Operation)과 관련되는 내부통제로서 기업내부 및 고객을 포함하는 기업가치 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절차 및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이다. 사외이사가 일상적인 조직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법규준수(Compliance)와 관련하여서는 조직운영 내부통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련한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시장정보 및 마케팅, 영업, 소비자 불만 대응 등 일선부서로부터 보고도 받고 이를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직 운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결언

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주도한다. 내부통제는 구축과 운영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마다 내부통제 수준은 다양하다. 내부통제는 형식보다는 실제 운영에서의 작동과 효과가 중요하다.

최근의 대규모 횡령 및 안전사건들은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킨다. 불법 행위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제재 뿐만 아니라 회사와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며 지배구조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는 필수적이다.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운영 환경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창출을 추구할 수 있다.

## II. CCG 아젠다 ①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와 이해관계자의 복합적 역할

#### 요약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CEO와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회사의 주주, 직원, 언론 및 정부 규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이며, 이러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보수 결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경영진 보수는 기본급, 복리후생, 단기(일반적으로 연간) 성과에 연동된 보너스 제도와 경영진의 이익을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일치시키는 장기 인센티브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직책, 산업 분야, 지역 및 기업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이사회와 보수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장기 vs.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딜로이트 글로벌의 최고경영진 프로그램(Chief Executive Program)과 연계하여, 이번 On the board's agenda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 보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최신 동향, 시장 변동성에 따른 도전 및 국가 간의 차이가 보수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019년 9월에 본 주제를 마지막으로 논의한 이후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사이 이사회와 경영진은 글로벌 팬데믹, 대(大)퇴직(The Great Resignation), 비정상적인 역사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외에도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경영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이사들에게 현재의 경영진 보수를 둘러싼 환경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들의 조합으로 보일 수 있다.

1)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Board governance and strategy in a changing global economic landscape」, 2023년 4월호

## II. CCG 아젠다 ①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와 이해관계자의 복합적 역할

#### 이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경영진 보수 결정은 왜 중요한가?

CEO와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회사의 주주, 직원, 언론 및 정부 규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이러한 높은 관심 때문에 보수 거버넌스의 복잡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경영진 보수 전략은 성과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수 수준을 주주 수익과 맞추며,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장려하여 이사회 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영역에 대한 전략 수립 시 최근 몇 년 간의 여러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sup>2)</sup>

<그림 1> 성공적인 경영진 보수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2) DEI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의미하며 ESG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를 의미함

## II. CCG 아젠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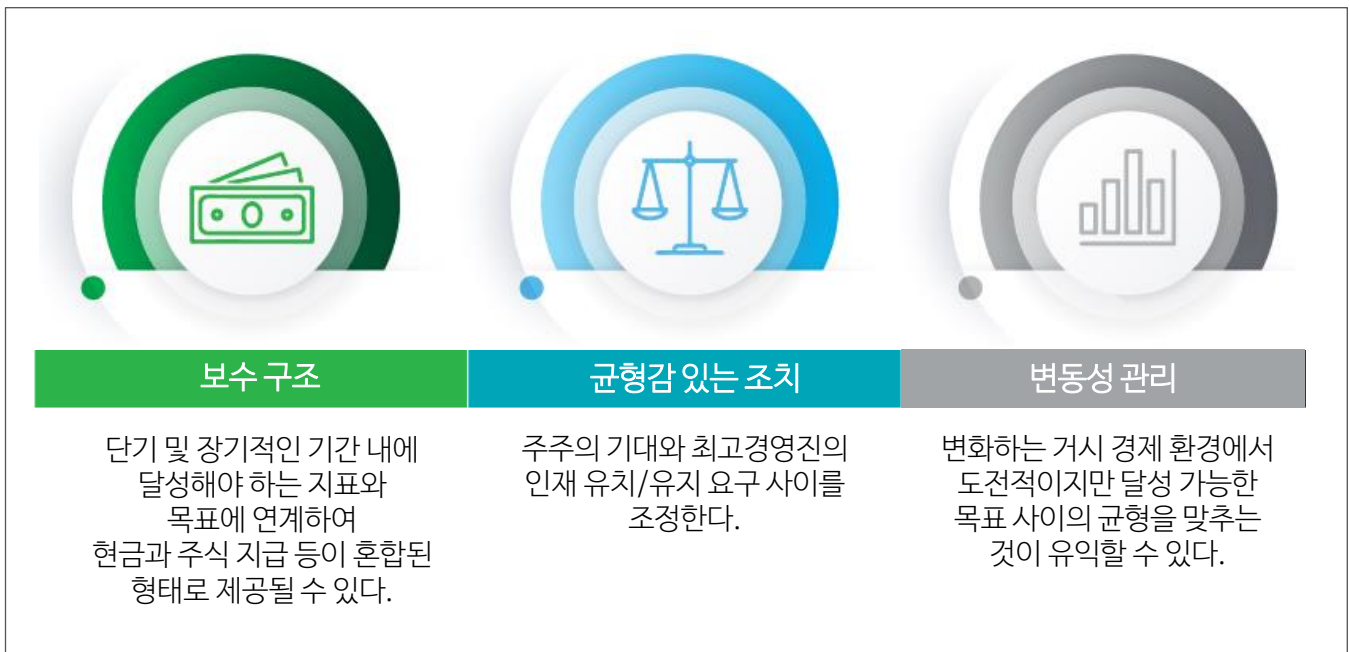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 복합적 역할

#### 경영진 보수구조, 평가지표 및 인센티브

경영진 보수는 (1) 기본급, (2) 복리후생, (3) 단기(일반적으로 연간) 성과에 연동된 보너스 제도, (4) 경영진의 이익을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일치시키는 장기 인센티브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경영진 보수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표준화되어 왔지만, 각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책, 산업 분야, 지역 및 기업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sup>3)</sup>

단기적인 경영진의 조치와 장기적인 회사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경영진 보수 전략 결정에 있어 기업 거버넌스의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이슈 간의 긴장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sup>4)</sup> 비즈니스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비용 절감을 통해 단기 이익을 올리지만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는 인재 유출과 시장 기회를 잃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sup>5)</sup> 이것은 적어도 2000년대 초 이후로 경영진 보수가 더 장기적인 관점의 주식 기반의 보수지급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sup>6)</sup>

<그림 2> 경영진 보수 결정 시 고려사항<sup>7)</sup>



3) David De Angelis and Yaniv Grinstein, 「Performance terms in CEO compensation contracts」, Review of Finance 19, no. 2 (2015): pp. 619–51.

4) Lucian Bebchuk and Jesse Fried, 「Pay without Performance: The Unfulfilled Promise of Executive Compens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5) Patricia M. Dechow and Richard G. Sloan, 「Executive incentives and the horizon problem: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no. 1 (1991): pp. 51–89.

6) Barbara Baksa, 「4 trends in equity award usage and eligibility」, National Association of Stock Plan Professionals (NASPP), February 15, 2022.

7) Boris Groysberg et al., 「Compensation packages that actually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2021; Atif Ikram, Zhichuan (Frank) Li, and Dylan Minor, 「CSR-contingent executive compensation contract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51 (June 2023): p.105655.

## II. CCG 아젠다 ①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 복합적 역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는 단기 및 장기적인 인센티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단기 지표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로, 재무지표는 매출, 이익 및 현금 흐름과 같은 회사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두 번째로, 전략적(또는 비재무적인) 지표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성과에 있어 중요한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두 번째 유형은 기업의 목표,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등의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sup>8)</sup>

<표 1> 경영진 보수에 대한 단기 지표 예시

재무적 관점 <sup>9)</sup>	전략적(비재무적) 관점	
항목 구분	비즈니스 목표 <sup>10)</sup>	기업 가치 <sup>11)</sup>
매출	개인의 성과	임직원 DEI 강화
이익	고객 만족	ESG 목표 달성
현금흐름	시장점유율 증가	지역사회 참여

8) Seymour Burchman and Blair Jones, 「Reevaluating executive compensation to meet stakeholder needs」,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 27, 2022.

9) Wilbur Lewellen, Claudio Loderer, and Kenneth Martin, 「Executive compensation and executive incentive problem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9, no. 3 (December 1987): pp. 287–310; Hamid Mehran, 「Executive compensation structure, ownership,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8, no. 2 (June 1995): pp. 163–84.

10) Suman Basuroy, Kimberly C. Gleason, and Yezen H. Kannan, 「CEO compensation, customer satisfaction, and firm value」, Review of Accounting and Finance 13, no. 4 (January 2014): 326–52; Xueming Luo, Jan Wieseke, and Christian Homburg, 「Incentivizing CEOs to build customer- and employee-firm relations for higher customer satisfaction and firm valu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 (2012): pp. 745–58.

11) Bryan Hong, Zhichuan Li, and Dylan Minor, 「Corporate govern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6 (2016): 199–213.

## II. CCG 아젠다 ①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들의 복합적 역할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에 따르면, 가치 지향적인 성과 지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sup>12)</sup> 따라서 현재로서는 DEI 및 ESG 지표가 일반적으로 단기 인센티브의 전략의 일부로 포함된다.<sup>13)</sup> 미국의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의 연구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73%가 '특정 유형의 ESG 지표를 포함하는 경영진 보수 계획'을 갖고 있다.<sup>14)</sup>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이 지표를 경영진 보수 계획에 포함시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데이터<sup>15)</sup>는 기업 가치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회사가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약속의 정도를 부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16)</sup>

장기 인센티브에 대해 살펴보면, 2023년 미국 주식보상 동향에 대한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상장기업들은 인센티브 포트폴리오 내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사용과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응답자들은 재직기간 연동형 지급의 비중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sup>17)</sup>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경영진 보수 전략에 대해 "위험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지급 확실성을 높여 경영진 유지를 우선시하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12) Kristen Sullivan and Maureen Bujno, 「Incorporating ESG measures into executive compensation plan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May 24, 2021.

13) Huiqi Gan and Melloney C. Simerly, 「The use of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Does the strength of corporate governance matter?」, American Journal of Management 19, no. 5 (2019): pp. 10-30.

14)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과 지표로 우선시하고, 이를 경영진 보수에 연계하는 회사들은 재무적으로 동종 기업보다 우수한 경향을 보여주었음. Isabel-María García-Sánchez and Jennifer Martínez-Ferrero, 「Chief executive officer a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the environment」,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8, no. 4 (May 2019): pp. 542-55.

15) Merel Spierings, 「Linking executive compensation to ESG performance」, The Conference Board, October 28, 2022.

16) Seymour Burchman and Blair Jones, 「Is your executive compensation plan undermining your mission?」,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8, 2020.

17) Ian Dawson and Kenneth Wimberly, 「Executive compensation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 presentation at the Deloitte Total Rewards Summit: Rewards without Boundaries, virtual,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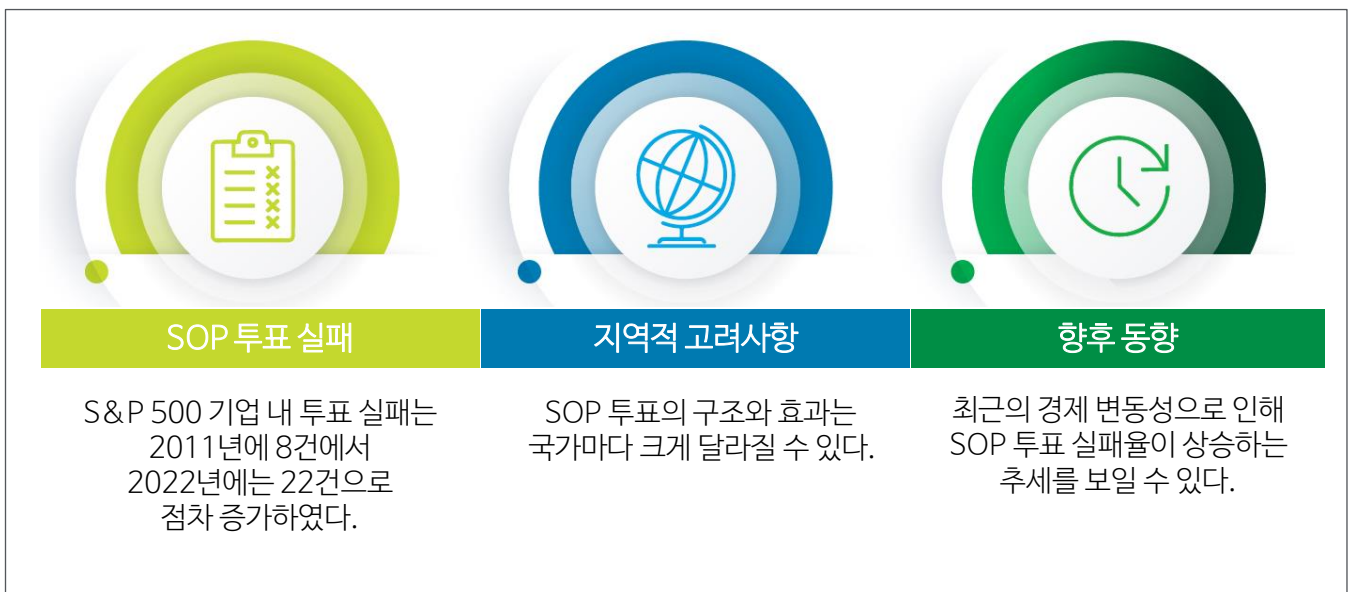
## II. CCG 아젠다 ①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 복합적 역할

####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 votes)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 votes, 이하 'SOP')은 투표는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개념은 아닐지라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sup>18)</sup> 첫째, 경영진 보수에 대한 공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 조사를 받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SOP 투표는 미국에서 구속력이 없지만, 여전히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닌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은 70% 미만의 투표율로 통과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간주한다.<sup>19)</sup> 이러한 경우,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은 기업은 주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의 대응이 나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은 차후 "반대" SOP 투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OP) 고려사항과 주목할 사항<sup>20)</sup>



18) Barbara Novick, 「Executive compensation: The role of public company shareholder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July 31, 2019.

19)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SS), United States compensation polici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2.

20) John Ellerman, Ira Kay, and Don Kokoskie, 「The current landscape in executive compensation as reflected in the 2022 proxy seas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October 24, 2022; Linda Pappas, Jose Lawani, and Perla Cuevas, 「The 2023 say on pay season – Potential outcomes and consideration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May 16, 2023.

## II. CCG 아젠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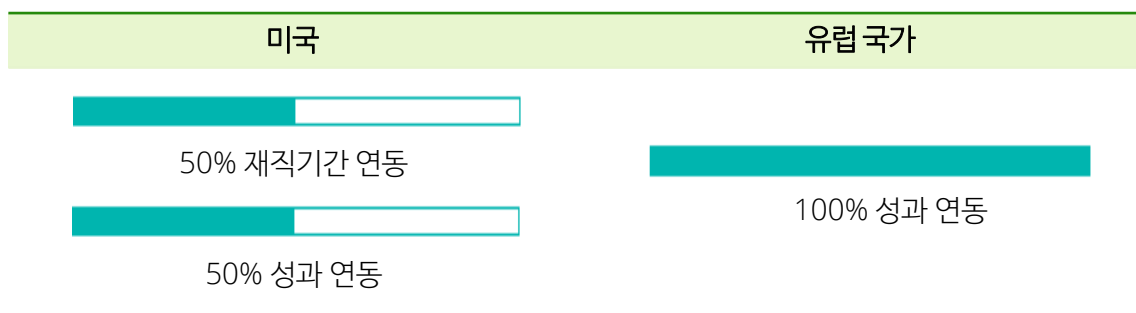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들의 복합적 역할

#### 경영진 보수 전략의 지역적 차이

중요한 것은 장기 인센티브의 "포트폴리오"(재직기간 및 성과 연동 지급방식의 조합)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경영진 인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및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려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경영진 보수 지급 시 재직기간과 연동한 RSU를 회피하고 성과와 연동한 RSU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점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런던 증권 거래소 담당자들이 경영진 보수에 대한 토론을 요청하며, 영국의 접근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재 유치와 상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sup>22)</sup>

<표 2> CEO 장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특징의 차이<sup>23)</sup>



보수에 대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0년 이상 규제에 의해 실시되는 구속력 없는 SOP 투표가 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미국의 SOP 이니셔티브가 자문기관들의 의견(및 그들을 대표하는 투자자들)을 강화시킨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SOP 투표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사회 전략과 향후 경영진 보수 구조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sup>24)</sup>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영국의 구속력 있는 보수 정책<sup>25)</sup>에 대한 투표가 향후 경영진 보수 계획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sup>26)</sup>

21) Martin J. Conyon and Kevin J. Murphy, 「The prince and the pauper? CEO pay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Economic Journal 110, no. 467 (2000): pp. 640-71.

22) Raval, Anjli. 「LSE Chief Calls for Higher UK Executive Pay to Retain Listings」, Financial Times, May 3, 2023, Online edition.

23) 이 표는 국가별 보수구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안되었고, 이것은 실제 보수 계획이 아니며, 기업이 본 표에 있는 항목을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음. Katie Kenny and Ian Dawson, 「Incentivizing leadership in a global talent market」, presentation at the GEO Virtual Conference, June 13, 2023.

24) Randall S. Thomas, Alan R. Palmiter, and James F. Cotter, 「Dodd-Frank's say on pay: Will it lead to a greater role for shar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Cornell Law Review 97, no. 5 (2012): pp. 1213-66.

25) 영국에서는 기업의 보수 보고서에 대한 연례 투표가 권고사항임

26) Betty (H.T.) Wu, Iain MacNeil, and Katarzyna Chalaczkiwicz-Ladna, 「Say on pay」 regulations and director remuneration: Evidence from the UK in the past two decades」, 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 20, no. 2 (2020): pp. 541-77

## II. CCG 아젠다 ①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들의 복합적 역할

#### 경영진 보수 데이터 동향

경영진 보수에 대한 데이터는 점점 더 대량으로 수집되며, 그 정보의 상세도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Dodd-Frank 법의 일부를 시행하는 새로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근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9월에 승인된 새로운 규칙은 보수와 성과 사이의 일부 관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sup>27)</sup> 2022년 12월부터 SEC 등록 기업은 이러한 지표에 대해 지난 3년 간의 데이터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한 데이터는 분석 방법과 평가 대상인 회사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표 3> 미국 경영진 보수 데이터의 주목할 사항

<p><b>CEO 대 일반 직원의 보수 비율 399 대 1</b> 2021년<sup>28)</sup> 대기업 CEO와 일반 직원들 간의 보수 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sup>29)</sup></p>
<p><b>평균 보수 가치는 전년 대비 1% 감소<sup>30)</sup></b> SEC의 실제 지급보수 공식을 통해 산출한 결과, S&amp;P 500 기업의 경영진 보수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약간 정체를 보임<sup>31)</sup></p>
<p><b>인종 및 성별에 따른 보수 차이<sup>32)</sup></b> 성별 및 인종별 최고 경영자 보수는 점차 동등해지고 있지만 그 차이는 산업별로 크게 상이함<sup>33)</sup></p>

27) Ian Dawson et al, 「New SEC disclosure rule: Executive pay versus performance」, Deloitte's The CFO Program Lens (blog), September 20, 2022.

28) CEO와 일반직원 간 보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론은 지역적 및 포용성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대형 상장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의 경우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2021년 자료임. Steven A. Bank and George S. Georgiev, 「Securities disclosure as soundbite: The case of CEO pay ratios」, Boston College Law Review 60(2019): p. 1123.

29) Josh Bivens and Jori Kandra, 「CEO pay has skyrocketed 1,460% since 1978」, Economic Policy Institute, October 4, 2022.

30) 경영진 보수에 대한 동향 데이터를 검토할 때, 분석 단위가 중요함. S&P 500 기업의 경영진 보수는 2021~2022년 사이 소폭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상위 10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Amit Batish, 「Equilar 100: The 100 highest-paid U.S. CEOs」, Equilar Insight, May 3, 2023.

31) Inti Pacheco, 「CEO pay packages fell sharply in 2022, the first decline in a decade」, Wall Street Journal, updated May 15, 2023; Eric W. Hilfers, Jonathan J. Katz, and Michael L. Arnold, 「SEC's new pay versus performance disclosure rule: Important things to know」,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October 28, 2022.

32)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는 많은 변수를 내포한 연구분야라는 점이며, CEO의 보수 형평성은 지역적 요인과 함께, 때때로 특정 소수인종 및 민족 집단의 경영진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규범의 차이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Atif Ellahie, Ahmed Tahoun, and İrem Tuna, 「Do common inherited beliefs and values influence CEO pa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4, nos. 2-3 (2017): pp.346-67.

33) Xiaohu Guo et al, 「Is there a racial gap in CEO compensation?」,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69 (2021): p. 102043.

## II. CCG 아젠다 ①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들의 복합적 역할

확실한 것은, 보다 상세해진 보수 보고의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추세를 보면 이해관계자들은 경영진 보수 데이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에게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sup>34)</sup>

예를 들어,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보수 비율이 "높다"고 인식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구매 패턴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sup>35)</sup> 마찬가지로, 가상의 무작위 실험에서도 직원들이 보수 비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경우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sup>36)</sup>

34) Dana R. Hermanson et al., 「The compensation committee proc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9, no. 3 (Fall 2012): pp. 666–709.

35) Bhavya Mohan et al., 「Consumers avoid buying from firms with higher CEO-to-worker pay ratio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8, no. 2 (2018): pp. 344–52.

36) Arianna H. Benedetti and Serena Chen, 「High CEO-to-worker pay ratios negatively impact consumer and employee perceptions of compan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9 (2018): pp. 378–93.

## II. CCG 아젠다 ①

###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와 보수의 복합적 역할

#### 결론 및 논의 사항

단기 및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상충되는 그룹을 대상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사항이다.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장기 vs.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sup>37)</sup>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보수위원회의 몫이다.<sup>38)</sup> 경영진 보수 고려 시 이사회 논의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과 개별 보수 지표가 간에 명확한 연계성이 있습니까? 지표가 개별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전체 전략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 회사의 경영진 보수 철학과 실행계획은 경쟁력 유지, 리스크 관리 및 장기적인 전략 목표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고 있습니까?
- 경영진 보수 계획에 스투어드십, DEI, ESG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 이사회나 위원회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내부 및 외부 형평성을 분석하였습니까? 이러한 형평성 평가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해야 합니까?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까?
- 어떤 상황에서 이사회나 보수위원회는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에 따라 보수 전략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또는 업데이트해야 합니까?
- 경영진은 보수 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까? 현재 프로세스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가치의 일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참여를 허용합니까?

37) BlackRock, 「Proxy voting outcomes: By the numbers」, Policy Spotlight (New York: April 2019).

38) Barbara Novick, 「Executive compensation: The role of public company shareholder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July 31, 2019.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요약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을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함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사(32.1%)에 불과하였고, 이는 전기대비(61사) 0.5%p 감소한 수치로 변화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남
- FY2022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사(52.4%)로 전기대비(89사) 1.5%p 감소하였고,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2분의 1(44사, 50%)에 불과함
- 분석결과, FY2021-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93.5% 이상이 광의의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논의 배경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행 상법에는 내부감사부서 설치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 감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적인 감사를 상시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로 회사 내 감사업무를 보조할 내부감사부서의 필요성이 크고, 상근 감사 설치 기업의 경우라도 광범위한 감사업무를 내부감사부서의 조력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 미국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The 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 'NYSE')에서 모든 상장법인에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한하여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sup>1)</sup>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3조 등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표 1>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국내 모범기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I.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I.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감사 모범기준	(I.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를 둔 회사는 감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회사는 감사 산하에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지배구조 모범기준	(IV.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표 2>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규정

구분	내용
NYSE 상장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3A.07.(c).(c))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신규 상장 후 1년 이내에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함</li> <li>- 내부감사부서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li> </ul>

###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었다고 운영방식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질은 달라질 수 있음<sup>2)</sup>

-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의 국제내부감사기준<sup>3)</sup>에 따르면, 내부감사부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는 독립성(independence)임
  -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이며, 감사기구의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함

2) 신보선, 한중수, 박채린, 현승임, 「내부감사부서와 잠정이익의 품질」, 회계학연구, 47(2), 2022

3) IIA, 「국제내부감사기준」, 2017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sup>4)</sup>, 외부감사인인 실질적인 회계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면, 내부감사부서는 업무감사의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임
    - 업무감사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경영진 및 경영진 산하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수적임
  - 이에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 역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 인사권, 성과평가가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감사위원회 산하의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함 <sup>5)</sup>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표 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 관련 국내 모범규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p>(IV.1.1 주요 감사업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li> </ul> <p>...(생략)...</p> <p>(IV.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u>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u>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p> <p>(IV.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u>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u></p>

4)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임

5) 정재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BFL), 제95호, 2019



## II. CCG 아젠다 2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표 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 관련 국내 모범규준 (계속)

구분	내용
지배구조 모범규준	<p>(IV.1.4)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생략)...</p> <p><b>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b> ...(생략)...</p> <p>또한 <u>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p> <p><b>주요 업무 7: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b></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u>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p>

- 한편,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sup>6)</sup>,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는 제시된 항목의 준수여부를 O, X로 표시하도록 하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여부(12번 항목)를 제시함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를 구성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보장을 위해 인사이동 및 인사평가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동의 등이 요구되어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함<sup>7)</sup>
- 본고는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sup>8)</sup>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을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sup>9)</sup>
  - 본고는 부서명을 불문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기능)가 있는 경우 내부감사부서로 통칭함<sup>10)</sup>

6) 부서명, 부서 직원 수, 해당업무 근무기간, 주요 업무수행내역 등 내부감사부서의 전반적인 현황이 공시

7) 모집단은 2021년, 2022년 말일 기준의 코스피200 기업임

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2022.03

9)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본고의 「부록」 자료수집에 수록함

10) 내부감사업무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도 내부감사부서로 분류함

## II. CCG 아젠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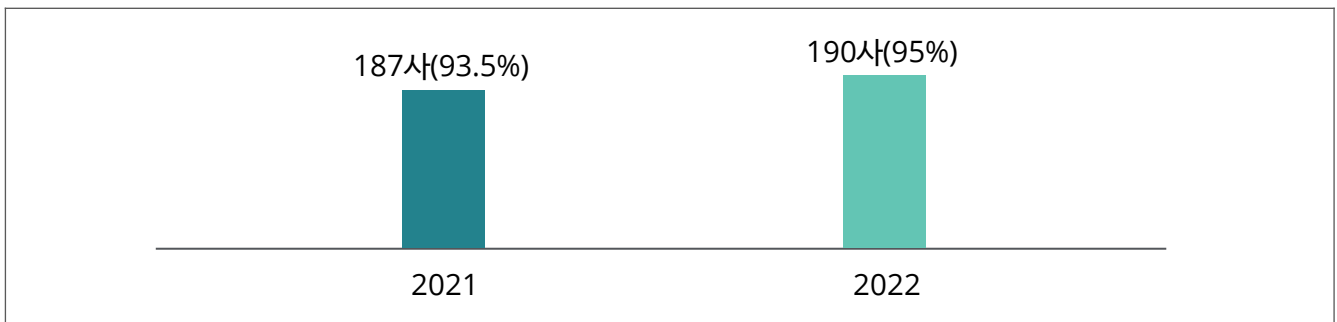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FY2022 & FY2021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1) 내부감사부서 설치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90사(95%)로 전기 대비(187사) 1.5%p 증가함

<그림 1> FY2022 vs. FY2021 KOSPI 200 기업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업 수



- FY2022-FY2021 내부감사부서 명칭의 대표적인 예시를 <표4>로 제시하였고 IIA의 3선 모델<sup>11)</sup>에서 2차 방어선에 속하는 부서(예: 컴플라이언스팀, 내부통제팀 등)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 FY2022-FY2021 내부감사부서 명칭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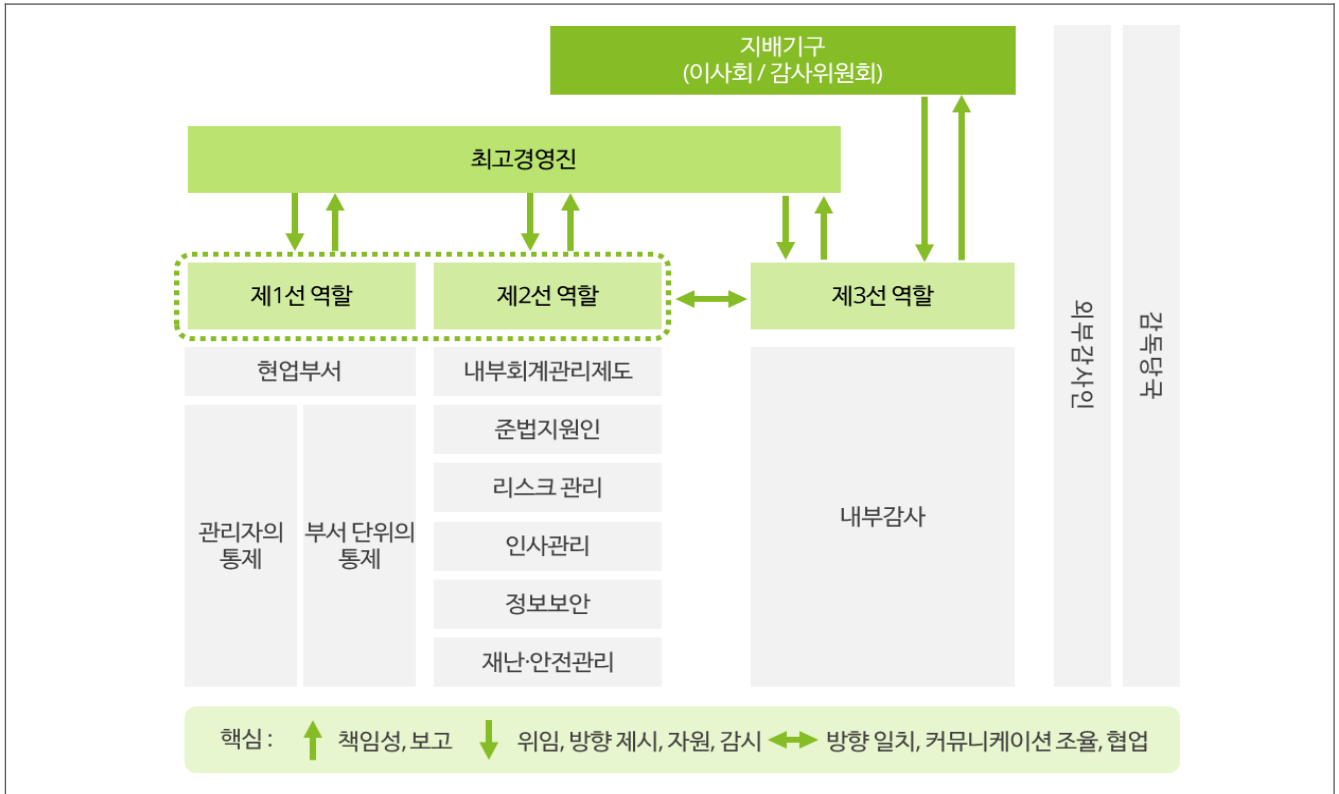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실/감사팀</li> <li>• 내부감사팀</li> <li>• 윤리경영실</li> <li>• 감사위원회 사무국</li> <li>• 감사지원팀</li> <li>• 컴플라이언스팀</li> <li>• 내부회계팀</li> <li>• 경영진단팀</li> <li>• 내부통제팀 등</li> </ul>

11) IIA, 「3선 모델」, 2020

## II. CCG 아젠다 ②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그림 2> IIA의 3선 모델



### 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95%) 중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81사(42.6%)로 전기 대비(83사) 1.8%p 감소하였고,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는 109사(57.4%)로 전기 대비(104사) 1.8%p 증가함
  -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73사(38.4%)로 전기 대비(68사) 2.1%p 증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표 5> FY202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현황

보고라인 구분	기업 수 (비율 <sup>12)</sup> )
감사(위원회)	81(42.6%)
경영진	73(38.4%)
이사회	6(3.2%)
미공시	30(15.8%)
합계	190(100%)

<표 6> FY20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현황

보고라인 구분	기업 수 (비율 <sup>13)</sup> )
감사(위원회)	83(44.4%)
경영진	68(36.4%)
이사회	5(2.7%)
미공시	31(16.6%)
합계	187(100%)

- 다만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직속 편제 여부를 조직도나 관련 문구만으로 판단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한편 북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약 70%가 내부감사부서로부터 기능적 보고라인을 확보하고 있음<sup>14)</sup>
  - IIA 국제내부감사기준에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중 보고라인(dual reporting line)을 권고하는데, 이는 기능적 보고를 통해 내부감사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며, 행정적 보고를 통해 관리행정 등의 사안은 경영진에 보고하여 일상적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요지임

12)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90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3)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87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4) Internal Audit Foundation, 「2022 Premier Global Research, Internal Audit: A Global View」, 2022, 북미 5개국 내부감사인 1,152명 대상 서베이 조사 결과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3)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sup>15)</sup>을 갖는 기업은 109사(57.4%)로 전기대비 1.3%p 상승하여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내부감사 직무 수행에 관하여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만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기업은 44사(23.2%)로 전기대비(42사) 0.7%p 상승함
  - 반면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보장 방안이 없다고 명시(2사, 1.1%)한 기업은 전기대비(4사) 1.0%p 감소하였고, 미공시(35사, 18.4%) 기업도 전기대비(36사, 19.3%) 0.9%p 감소함

<표 7> FY2022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sup>16)</sup>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책임자 임면동의권	109(57.4%)
구성원 신분보장만 명시	44(23.2%)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부재	2(1.1%)
미공시	35(18.4%)
합계	190(100%)

<표 8> FY2021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sup>17)</sup>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책임자 임면동의권	105(56.1%)
구성원 신분보장 명시	42(22.5%)
구성원 신분보장 방안 부재	4(2.1%)
미공시	36(19.3%)
합계	187(100%)

15)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시 동의 또는 협의 권한 보유

16)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90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7)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87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4)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의 동시 보유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90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곳은 61사(3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기대비(61사) 0.5%p 감소한 수치로 변화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아직 국내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표 9> FY2022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sup>18)</sup>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61(3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20(10.5%)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48(25.3%)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61(32.1%)
합계	190(100%)

<표 10> FY2021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sup>19</sup>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61(32.6%)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보유	22(11.8%)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보유	44(23.5%)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60(32.1%)
합계	187(100%)

18)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90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19)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187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한편, FY2022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사(52.4%)로 전기대비(89사, 53.9%) 약 1.6%p 감소함<sup>20)</sup>
-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절반(44사, 50%)에 불과하였고, 이는 전기대비(45사) 0.6%p 감소한 수치임

<표 11> FY20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독립성 확보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sup>21)</sup>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44(50.0%)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10(11.4%)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21(23.9%)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13(14.8%)
합계	88(100%)

<표 12> FY20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독립성 확보 현황

구분	기업 수 (비율 <sup>22)</sup>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	45(50.6%)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만 보유	10(11.2%)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만 보유	18(20.2%)
미공시 및 해당사항 없음	16(18.0%)
합계	89(100%)

20)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의무공시한 168사(FY2021는 165사)를 기준으로 설정함. 금융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나 해당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88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89사를 기준으로 산출함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결언

- 분석결과, FY2021-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93.5% 이상이 광의의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확보 현황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보유 현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갖추어 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공시하여도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내부감사부서로 보기 어려움
-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었더라도 운영방식이나 그 위상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질은 달라질 수 있음
  -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감사부서가 실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3>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고려사항<sup>23)</sup>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내부감사가 이중의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을 고려</li> <li>• 최고내부감사책임자(Chief Audit Executive, CAE)는 행정적·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경영진과 소통하고, 내부감사의 전략적 방향성과 감사업무의 이행 및 책임성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li> <li>• 이중의 보고체계를 통해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내부감사규정에 명기</li> <li>• 내부감사인이 필요한 정보와 인력에 접근할 수 있고, 내부감사에 필요한 조사기법을 제약없이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ul>

23)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022.12



## II. CCG 아젠다 ②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부록] 자료수집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의 I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에 공시되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자료,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감사기구의 내부감사기구 운영현황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조사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sup>24)</sup>에 따르면 '(iv)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현황(조직,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함
-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 '직할', '산하'의 문구로 명시되거나 조직도 상 감사위원회 산하로 도식화된 경우 감사위원회 직속 편제된 것으로 간주함<sup>25)</sup>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보유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기반으로 조사하였고,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전·출입시 감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도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아 임면동의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2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2022.03

25)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조직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소집공고의 III. 경영참고사항 내 1. 사업의 개요 상의 조직도를 확인함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현황

###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기업의 ESG 경영이 중시되면서 '준법경영 책임' 및 법·제도 측면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내부통제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음
-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현실로 국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이 권고되는 상황임
- 이에 FY2021-FY2022 기간의 KOSPI 200 기업의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하고자 함

### 논의 배경

- ESG 경영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준법경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법조계에서도 '준법경영 책임'의 범위는 담합 뿐 아니라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사고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인식되는 분위기임
- 또한,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 제도의 의무도입을 명시하고 있음

<표 1>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근거법

구분	내용
상법 제542조의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li> <li>•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li> <li>•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명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li> <li>•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li> </ul>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25조, 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함</li> <li>•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조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li> <li>• 준법감시인은 필요 시 상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음</li> <li>•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 이에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FY2021-FY2022 기간 동안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논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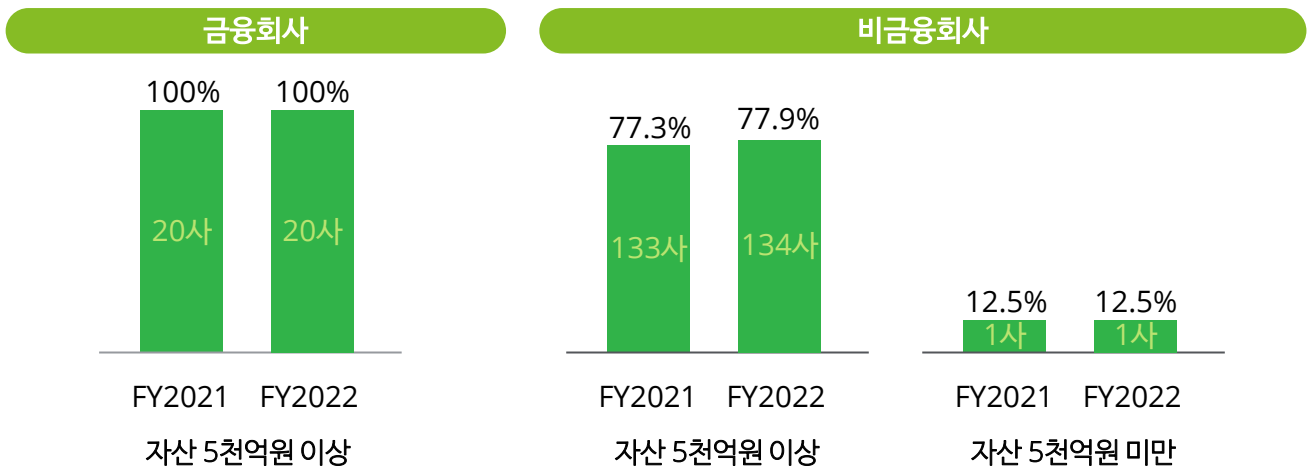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현황

#####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추이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모든 금융회사(20사)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전기대비 변화는 없음
  -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해당 제도의 도입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비금융회사는 78.5%(135사)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대비 0.6%p 상승함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비금융회사 172사 중 134사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비금융회사 8사 중 1사가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음
  - 준법감시인에 대해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되는 의무사항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 상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없는 현실도 기업의 미준수의 동기요인으로 파악됨

<그림 1>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추이<sup>1)</sup>



- 한편 '준법지원인 지원조직'(또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은 준법지원인(또는 준법감시인)을 도와 개별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여 준법자가점검 실시, 준법교육 실시, 준법문화 확산 활동 및 준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중임

1)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상 공시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현황

-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금융회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과 비금융회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평균 인원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의 평균 인원 수는 25.5명으로 전기대비 9.4%p 증가함
  - 비금융회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평균 인원 수는 10.3명으로 전기대비 9.6%p 증가함

<그림 2> KOSPI 200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또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평균인원 추이<sup>2)</sup>



#### 준법감독 관련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역할

-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이사회는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 감독기능의 수행이 적극 권장<sup>3)</sup>되며 최근 정부당국 또한 이사회의 준법 감독 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표 2> 정부당국이 강조하는 이사회에 대한 준법 감독 기능<sup>4)</sup>

-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 이사회의 역할 명확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
  - 내부통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기존 이사회 내 소위원회와 통합운영 허용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고됨<sup>5)</sup>
  - 감사위원회는 특히 윤리·준법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함

2)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1-FY2022 사업보고서 상 공시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3) 지배구조 모범규준 >> ② 이사회리더십 >> 1.3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 06

5)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4.4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현황

##### 결언

-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2.3%이며 전기대비 1.9%p 상승함
- 법제도 측면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내부통제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음
-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에 해당되는 모든 상장회사가 해당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은 현실로 국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이 권고됨
- FY2022 기준 KOSPI 200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금융회사의 77.9% 만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는 현실임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나 준법지원인이 없는 상장법인의 경우 기업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두어 담당자가 상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상시 회사의 관련 이슈에 대하여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을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업무적정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최근 정부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의해 강조되는 사안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되며,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위원회의 신설도 권고됨
  - 내부통제위원회 역할: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
- 감사위원회는 법규 준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타 위원회가 있는 경우라도 준법감독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법규 준수 및 윤리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회사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임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2021년~2023년간 일반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중요한 지표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sup>1)</sup>에 대한 준수율 및 동향을 살펴봄
- 2023년 기준 6개 핵심지표는 준수율 평균이 60% 미만으로 타 지표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해당 핵심지표와 준수율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33.1%),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46.7%),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40.7%),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19.9%), ⑧ 집중투표제 채택(4.1%),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47.3%)
- 2023년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이 90%를 넘는 4개 핵심지표는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관련 사항이 회사에서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해당 핵심지표와 준수율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99.7%),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91.5%),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92.7%),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98.1%)
- 2026년까지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논의 배경

- 2023년 5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의무공시는 단계적으로 2022년 현재 자산(연결) 1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 및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에 있음
- 본 섹션에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실행을 장려하는 FY2020~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을 파악하여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sup>2)</sup>

1)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2.03

2)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총 조사대상 회사: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2022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2021년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일반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1년~2023년 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함

<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sup>3)</sup>

구분	핵심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 2조 이상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9.5% 51사	26.5% 79사	35.6% 69사	9.6% 10사	33.1% 105사	40.2% 82사	20.4% 23사
	② 전자투표 실시	71.7% 124사	75.2% 224사	80.4% 156사	65.4% 68사	79.2% 251사	82.4% 168사	73.5% 83사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63.6% 110사	67.8% 202사	74.7% 145사	54.8% 57사	73.8% 234사	79.4% 162사	63.7% 72사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7.4% 82사	47.3% 141사	54.6% 106사	33.7% 35사	46.7% 148사	57.8% 118사	26.5% 30사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승계정책(비상시선임정책포함) 마련 및 운영	43.4% 75사	34.6% 103사	44.3% 86사	16.3% 17사	40.7% 129사	52.5% 107사	19.5% 22사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8.4% 153사	74.2% 221사	83.5% 162사	56.7% 59사	77.6% 246사	86.8% 177사	61.1% 69사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9.5% 51사	22.1% 66사	27.8% 54사	11.5% 12사	19.9% 63사	24.5% 50사	11.5% 13사
	⑧ 집중투표제 채택	5.2% 9사	3.7% 11사	5.2% 10사	1.0% 1사	4.1% 13사	5.9% 12사	0.9% 1사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0.5% 122사	63.4% 189사	71.6% 139사	48.1% 50사	65.6% 208사	75.0% 153사	48.7% 55사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3.1% 161사	99.0% 295사	99.5% 193사	98.1% 102사	99.7% 316사	100% 204사	99.1% 112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1% 168사	89.9% 268사	97.4% 189사	76.0% 79사	91.5% 290사	97.5% 199사	80.5% 91사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4.3% 94사	51.0% 152사	52.6% 102사	48.1% 50사	47.3% 150사	50.5% 103사	41.6% 47사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4.8% 164사	92.3% 275사	96.9% 188사	83.7% 87사	92.7% 294사	97.1% 198사	85.0% 96사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79.8% 138사	60.7% 181사	75.3% 146사	33.7% 35사	64.7% 205사	77.9% 159사	40.7% 46사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00% 173사	98.7% 294사	100% 194사	96.2% 100사	98.1% 311사	99.5% 203사	95.6% 108사
준수비율 평균		64.5%	60.4%	66.6%	48.8%	62.3%	68.5%	51.2%

3)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총 조사대상 회사: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2022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2021년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일반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연결자산규모 1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2.3%이며 전기대비 1.9%p 상승함
  -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68.5%로 전기대비 1.9%p 상승함
  -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51.2%로 전기대비 2.4%p 상승함
- 2023년 기준 하기의 6개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0% 미만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임

<표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60% 미만 현황<sup>4)</sup>

구분	핵심지표	2023년			관련 코멘트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3.1% 105사	40.2% 82사	20.4% 23사	• 상법 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준수하는 선에서 공시하고 있음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6.7% 148사	57.8% 118사	26.5% 30사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경향을 보임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0.7% 129사	52.5% 107사	19.5% 22사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준수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함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19.9% 63사	24.5% 50사	11.5% 13사	•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권고되지만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임
	⑧ 집중투표제 채택	4.1% 13사	5.9% 12사	0.9% 1사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수동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준수율 현황으로 인용되고 있음
감사 기구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 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47.3% 150사	50.5% 103사	41.6% 47사	• 부서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 등 사안에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여 경영진이 단독적인 권한행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나,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임

4)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총 조사대상 회사: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일반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3년 기준 하기의 6개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90% 이상으로 주로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 차원이라고 사료됨

<표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90% 이상 현황<sup>5)</sup>

구분	핵심지표	2023년			관련 코멘트
		소계	자산 2조 이상	자산 1조 ~2조	
이사회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9.7% 316사	100% 204사	99.1% 112사	• 해당 사안은 법제화 되어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준수율은 100% 수준임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1.5% 290사	97.5% 199사	80.5% 91사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반영됨을 보여주는 준수현황임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2.7% 294사	97.1% 198사	85.0% 96사	• 상법(제542의11)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는 동법을 적용 받지 않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업 구분은 연결 자산 기준으로,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모두 설치 하였고 최소 1명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재직중임을 확인함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8.1% 311사	99.5% 203사	95.6% 108사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상법 제412조)되어 있고 회사에 관련 규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실행되는 상황으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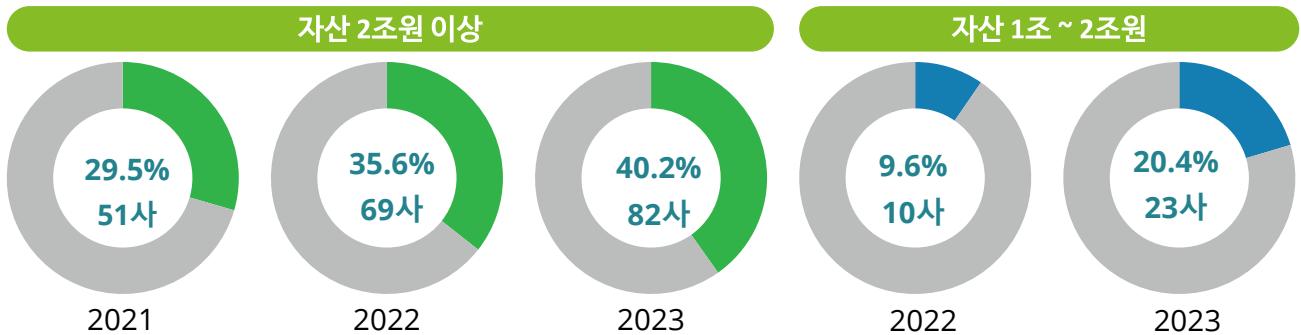
5)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총 조사대상 회사: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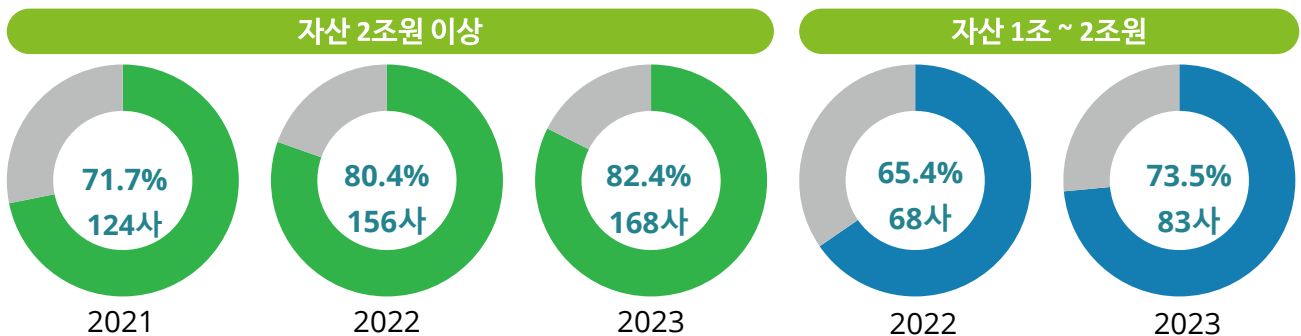
<그림 1> 핵심지표 ① 번 준수 현황



- 실무적으로 상법 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충족하는 선에서 준수 및 공시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40.2%가 주총 4주 전에 통지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4.6%p 증가하였고,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주총 4주 전 통지는 20.4%로 전기대비 10.8%p 증가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

<그림 2> 핵심지표 ② 준수 현황



- 2020년 개정된 상법<sup>6)</sup>에서는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기업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음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82.4%가 전자투표를 도입 하였으며, 전기대비 2.0%p 상승하여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중임
- 2023년 기준,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73.5%가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전기대비 8.1%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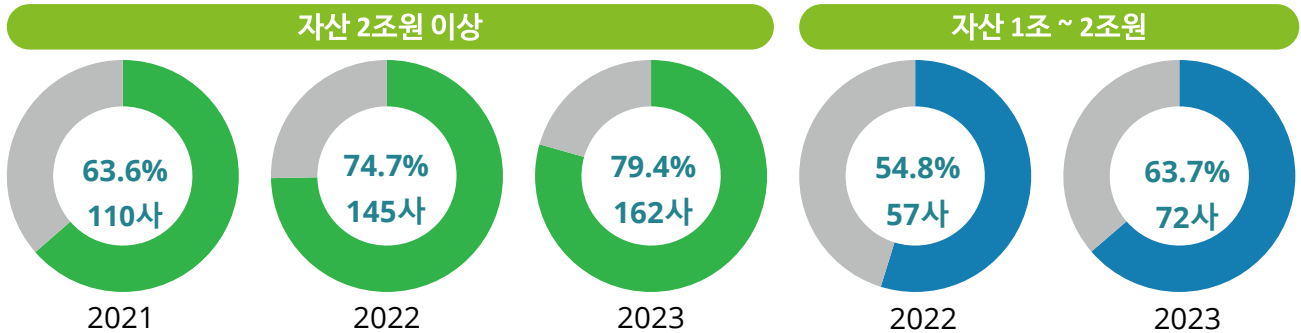
6) 상법 제368의 4에서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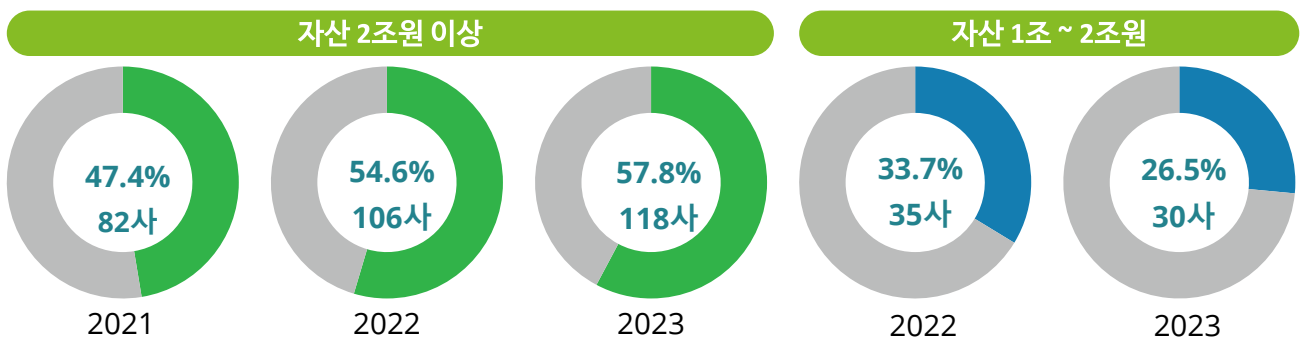
<그림 3> 핵심지표 ③ 번 준수 현황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9.4%가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전기대비 4.7%p 증가하여 개선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63.7%가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
- 주주총회 집중일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하며,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그림 4> 핵심지표 ④ 번 준수 현황



- 일반상장법인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7)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7.8%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고 전기대비 3.2%p 증가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26.5%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여 전기대비 7.2%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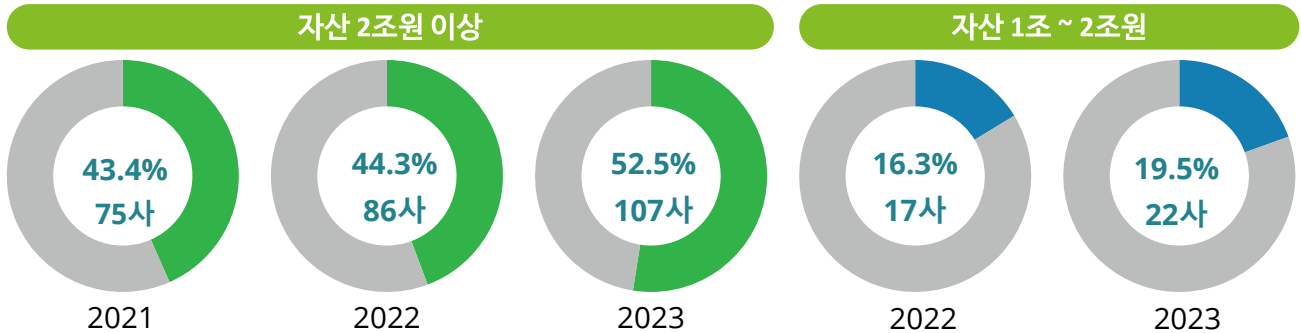
7) 배당정책은 당기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배당시 기준으로 삼는 실행기준·방향을 의미하고, 배당실시 계획은 당기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당 결정 공시 등을 통해 이행 가능함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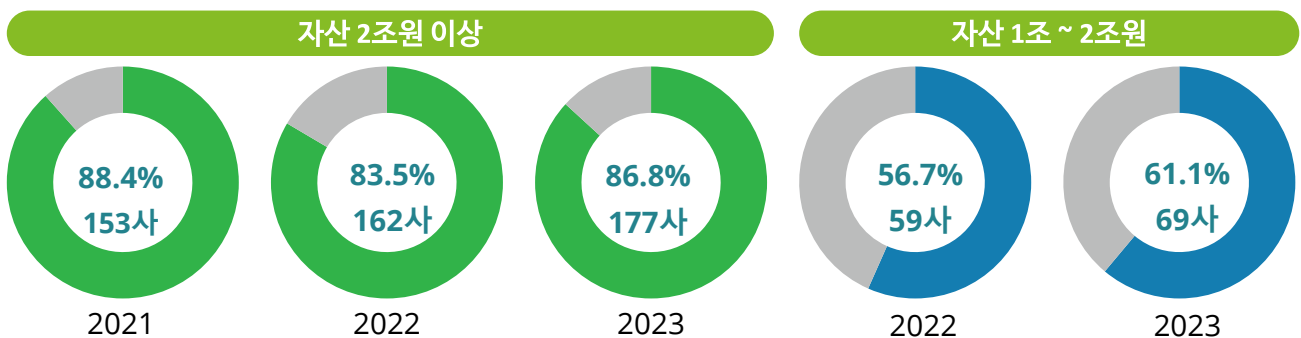
<그림 5> 핵심지표 ⑤ 번 준수 현황



- 전체기업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과 관련한 준수율 및 개선 추이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임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2.5%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8.2%p 증가하는 등 개선 중임
- 2023년 기준,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19.5%만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3.2%p 증가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그림 6> 핵심지표 ⑥ 번 준수 현황



-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 권고됨<sup>8)</sup>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86.8%가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3.3%p 증가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61.1%가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대비 4.4%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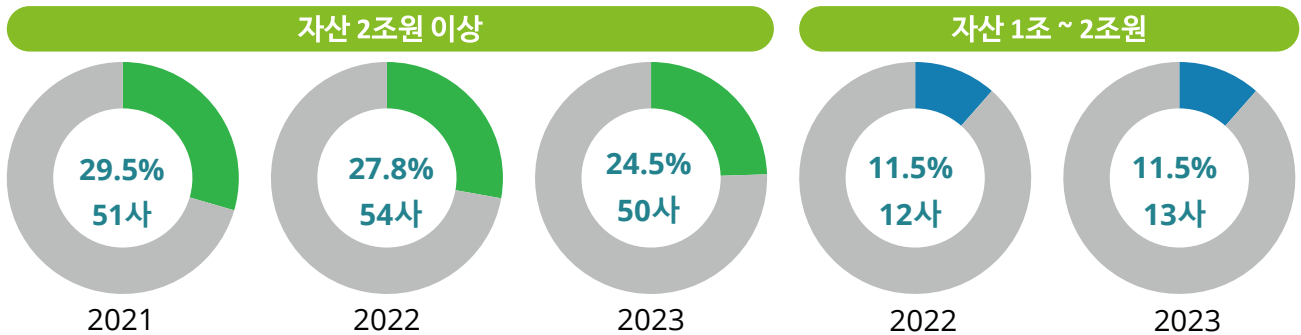
8) 지배구조 모범규준 II.1.5, 내부통제정책에 내부회계관리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의 정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주로 리스크 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주요 미준수 사유임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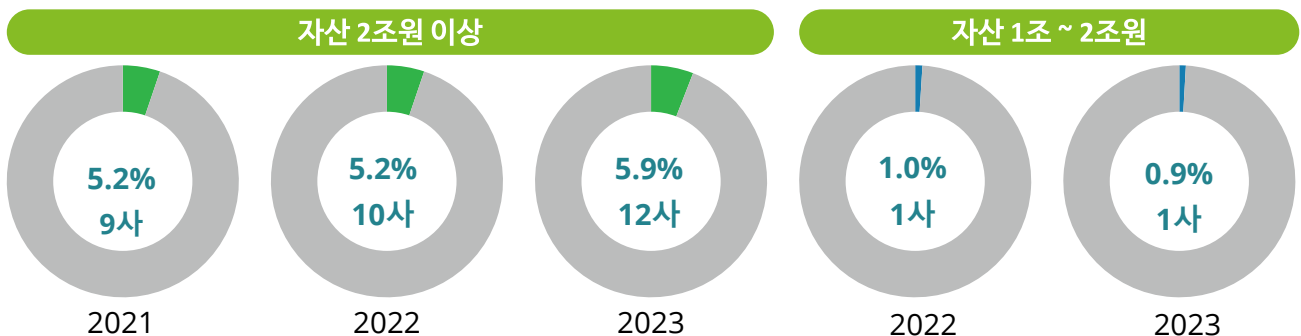
<그림 7> 핵심지표 ⑦ 번 준수 현황



-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 정립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고되고<sup>9)</sup> 있는데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거나 사업 전략에 보조를 맞춰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는지 여부의 파악이 용이한 지표임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24.5%만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준수 중이며 3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고 (전기대비 3.3%p 감소),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11.5%만이 이를 준수하여 미흡한 수준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집중투표제 채택

<그림 8> 핵심지표 ⑧ 번 준수 현황



- '집중투표제'<sup>10)</sup> 채택'은 15개 핵심지표 준수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9%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기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0.9%만이 집중투표제를 채택중임

9) 지배구조 모범규준 II.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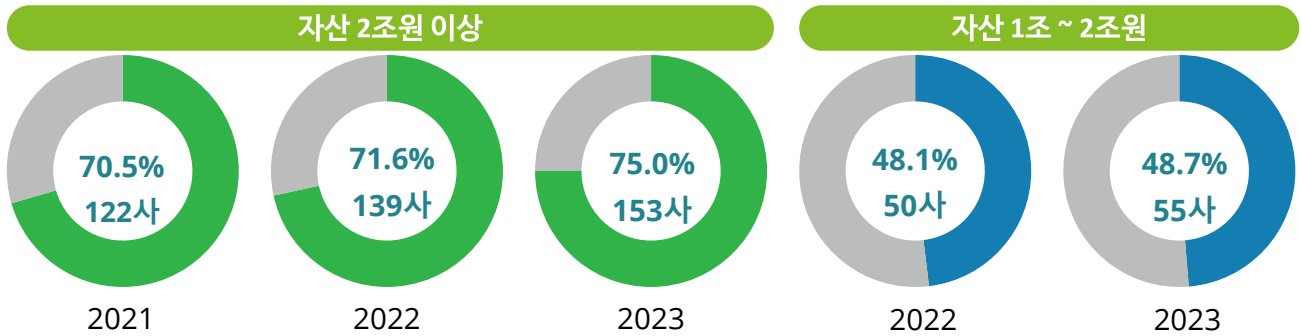
10) 상법 제382의2.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대주주의 권행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상존함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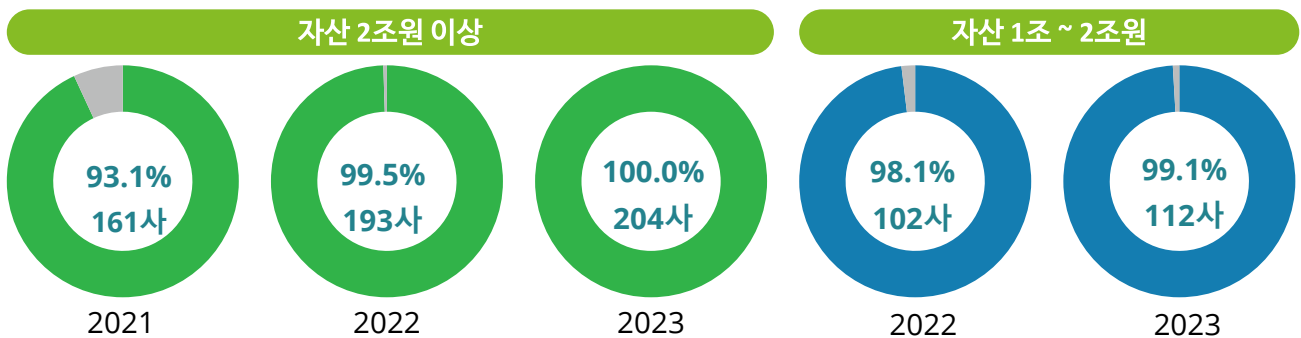
<그림 9> 핵심지표 ⑨ 번 준수 현황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5.0%가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한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3.4%p 상승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48.7%가 준수하여 전기대비 0.6%p 상승함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예시: 법규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사업적 제재를 받은 경우, 자기거래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그림 10> 핵심지표 ⑩ 번 준수 현황



- '6년 초과 장기재직(계열회사 포함 9년) 사외이사 부존재' 사항은 법제화 되었음<sup>11)</sup>
- 2023년 기준, 모든 유가증권 일반상장법인은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부재함<sup>12)</sup>

11)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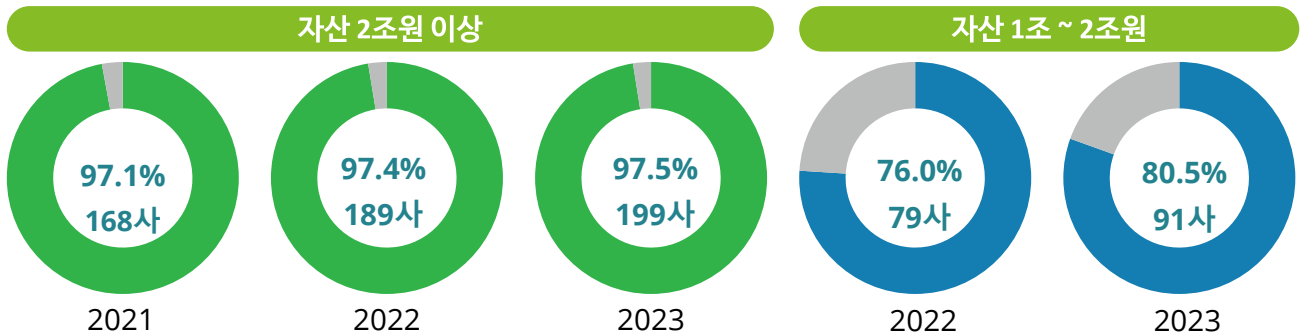
12) 자산 1조원~2조원 기업 미준수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 선임하였거나 회사 운영 상 후임자 선임을 위한 직위를 유지한 예외적 사례였음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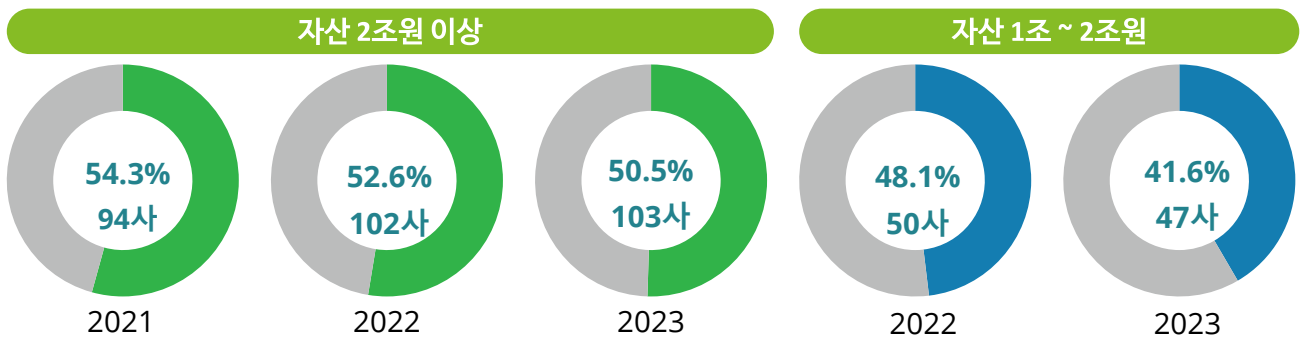
<그림 11> 핵심지표 ⑪ 번 준수 현황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sup>13)</sup>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7.5%와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80.5%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중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그림 12> 핵심지표 ⑫ 번 준수 현황



- 효과적인 내부통제정책 운영 및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되며 관련 정책이 실행될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임<sup>14)</sup>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50.5%만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데 그치며 전년대비 2.1%p 하락하였고,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도 41.6%만이(전년대비 6.5%p 하락)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함

13)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5.1.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에 대한 교육 실시가 권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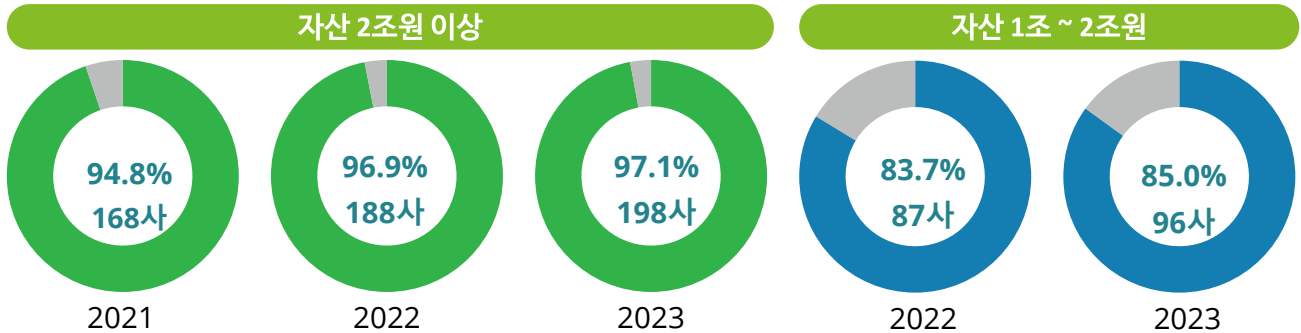
14)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 확보 권장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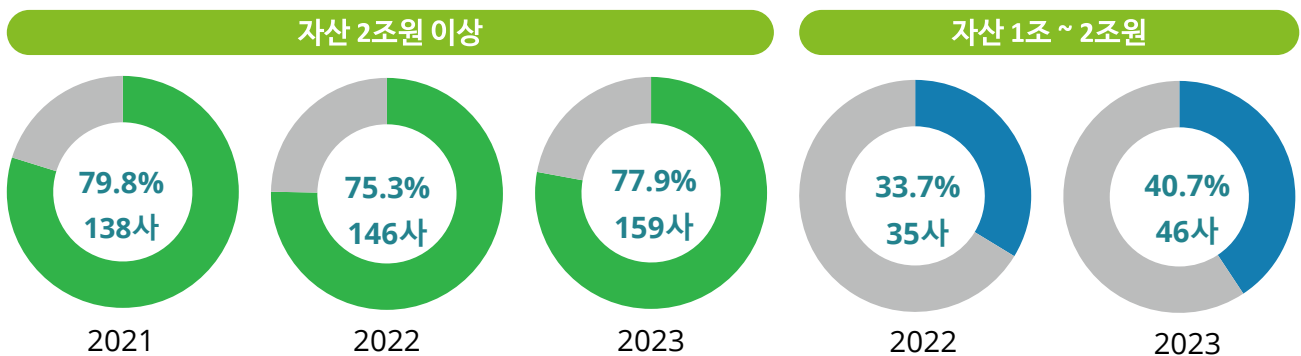
<그림 13> 핵심지표 ⑬ 번 준수 현황



- 상장법인의 내부감사기구로 설치된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sup>15)</sup> 되어야 하고 해당 요건은 상법시행령<sup>16)</sup>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 설치의 경우 법률상 별도의 전문가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7.1%<sup>17)</sup>는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며 전기대비 0.2%p 상승하였고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85.0%가 존재한다고 기재하여 전기대비 1.3%p 상승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그림 14> 핵심지표 ⑭ 번 준수 현황



-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할 것이 권고됨<sup>18)</sup>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7.9%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하였고 전기대비 2.6%p 상승하였으며,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40.7%로 응답하여 전기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7%p) 상승함

15)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16)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17) 미준수 6개 기업은 연결자산 규모는 2조원 이상이지만 개별자산 규모는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포함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18)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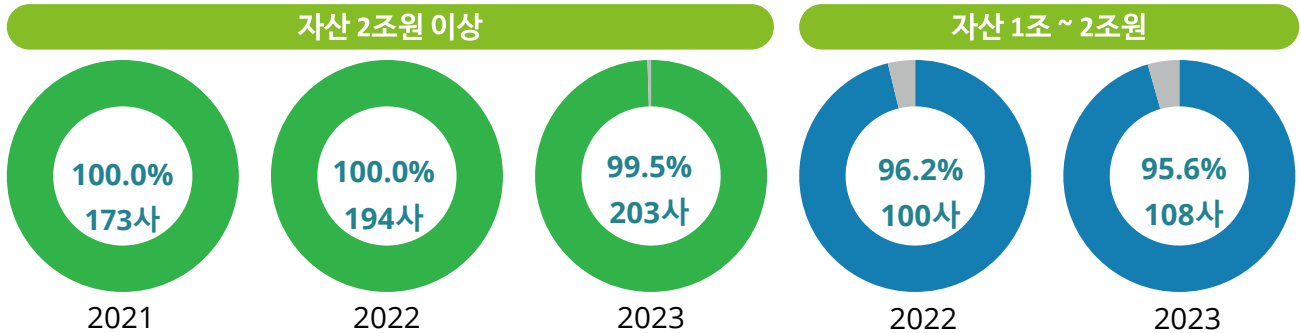


### III. 데이터 포인트 2

#### 2021년~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그림 15> 핵심지표 ⑮ 번 준수 현황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함<sup>19)</sup>
- 2023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99.5%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자산 1조원~2조원 일반상장법인의 95.6%가 본 핵심지표를 준수하고 있다고 기재함
  - 미준수 사례의 경우 관련 명문화된 규정의 부재 또는 실효적인 감사활동 실행의 미흡으로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 결언

-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3개 연도 자산총액(연결) 1조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의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파악하였음
  - 개별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된 15개 핵심지표 준수여부 자료로 조사된 기업들의 거버넌스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추후 ESG 경영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받는데 의의가 있음
- 2026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업들은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19)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2.7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ISSB”)는 2023년 06월 26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첫번째 기준서(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공시’ 기준을 발표함
- ISSB는 전환이행그룹(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 TIG<sup>1)</sup>) 및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창설<sup>2)</sup>을 시작으로 전 세계 국가 및 GRI 등과 협력하여 ISSB 기준의 도입을 지원할 예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IFRS S1, S2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발표할 계획임

#### 논의배경

- ISSB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 각 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을 제시함
  - 세계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금융안정위원회(FSB),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개발하여 기준 도입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확보함
  - 전 세계 140개국에서 사용하는 IFRS 회계기준의 핵심개념을 기반으로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에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됨

1) 새로운 기준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분석 및 논의함으로써, 기업의 기준 적용을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작성자, 이용자 등)들이 ISSB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

##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 진행경과

- 2022년 03월 31일 - 국제회계기준(IFRS, 이하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이하 "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sup>3)</sup>
  - 기후 관련 SASB 지표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이하,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 2022년 05월 11일 - ISSB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이하 "SASB")<sup>4)</sup>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의 공개초안<sup>5)</sup>을 발표함<sup>6)</sup>
  - TCFD<sup>7)</sup> 권고안을 기반으로 SASB의 산업별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해 작성하였으며, SASB 표준 개선을 통해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2023년 06월 26일 - ISSB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번째 기준서(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함)<sup>8)</sup>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을 공시하기 위한 공통언어(Common language)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3) 금융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2022.7.27

4)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난 201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속한 기업들의 공시기준을 마련하고자 설립됨

5)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6) 한국회계기준원,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2023.5.16

7) TCFD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임

8) 한국회계기준원,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2023.6.26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 주요내용

- ISSB는 TCFD 권고안<sup>9)</sup>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함
  -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함<sup>10)</sup>
  - IFRS 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도 참조되었으며,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 계획임

<표 1> IFRS S1과 S2 설명<sup>11)</sup>

구분	내용
 <p><b>IFRS S1 일반 요구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에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li> <li>• TCFD 구조를 적용</li> <li>• 산업별 공시를 요구</li> <li>•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li> <li>• 기후(IFRS S2) 이외의 주제를 위한 기업지원용 참고자료를 기술</li> <li>• GAAP<sup>12)</sup>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도, ISSB 기준 적용 가능</li> </ul>
 <p><b>IFRS S2 기후 관련 공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규정</li> <li>• TCFD 권고사항을 완전히 통합하여 반영</li> <li>• 투자자 정보 필요를 맞추기 위해 IFRS S1과 함께 사용</li> <li>• SASB 기준에 기반한 첨부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공시를 요구</li> <li>• 기후 회복력(전략), Scope 3 GHG 배출량(지표) 관련 정보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분석과 측정에 사용된 접근법, 투입변수 등) 공시를 요구</li> </ul>

9)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4개 핵심영역(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 및 핵심영역별 공개 내용을 제시

10,11)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센터,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2023.7

1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회계규정 자체, 구체적인 회계실무 또는 실무로부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회계 기준을 의미

##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 향후일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의 IFRS S1, S2의 이행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임

&lt;표 2&gt; 한국회계기준원 향후일정

구분	내용
'23.10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S1, S2 국문 번역본 공개초안 발표</li> <li>• IFRS S1, S2 관련 KSSB 포럼 개최</li> </ul>
'23.1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S1, S2 최종 국문 번역본 발표</li> </ul>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群) 구분 세부기준 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sup>1)</sup>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sup>2)</sup> 개정('23.5.2)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3.7.20부터 시행되며, 대형비장상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23.1.1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됨

####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을 고시하였으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함<sup>3)</sup>
  -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하였음('23.5)<sup>4)</sup>

#### 규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

- 1)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함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제31조 제7항, 제31조 제8항, 제32조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제6조의2, 제26조 제7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5호

3)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장상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4.24

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7호」, 2023.5.2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표 1>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개정사항

종전 <sup>5)</sup>		개정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li> </ul>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 등") 감리조치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단계 감경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li> <li>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등을 할 것</li> <li>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sup>6)</sup></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li> <li>감리조치 시 검찰고발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li> </ul> </li> <li>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li> </ul> </li> </ul>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외감규정의 일부를 개정함(23.5.2. 시행)<sup>7)</sup>

<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개정사항

종전 <sup>8)</sup>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sup>9)</sup>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을 가중하나, 경영진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가중사유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리 실시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취약점 및 시정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한 경우</li> </ul> </li> </ul>

5)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1

6)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 제1항 관련)

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조치등의 기준(제27조 제2항 관련)

8)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7.12

9)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임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정

□ 조치수준을 위반행위 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

<표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개정사항

	종전 <sup>10)</sup>	개정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한 경과 후 유예기간이내에 제출 시 기본조치 Ⅱ 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치수준 1단계 하향 및 감경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향(Ⅱ 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 Ⅲ 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li> <li>지연제출(기재사항 누락·오류 포함) 3일 내 자체 시정 하면 1 단계 감경하도록 함</li> </ul> </li> </ul>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 누락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재사항의 누락 Ⅲ 단계, 30점</li> <li>기재사항의 오류 Ⅳ 단계, 20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Ⅱ 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li> </ul> </li> </ul>
위반사항 2개 이상인 경우 양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정을 신설하여 조치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li> </ul> </li> </ul>	

<표 4> 사업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 양정기준<sup>11)</sup>

위반유형	조치내용(지정제외점수)
가중시 최대	150점
Ⅰ. 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100점
Ⅱ. 지연제출(기한경과 후 유예기간 이내)	60점
Ⅲ. 기재사항의 누락	30점
Ⅳ. 기재사항의 오류	20점
Ⅴ. 비차·공시의무 위반	10점
감경시 최소	경고

10)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2018.12.27

11)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9.4.1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 4)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조정

-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목적으로 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총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표 5>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에 대한 개정사항

종전		개정
감사인군(群)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일(산정기준일 시점)의 인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li> </ul>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가군 ~ 라군의 4개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6> 감사인군(群) 구분<sup>12)</sup>

군	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인원 비중	회계감사 손해배상 능력
가	600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최소 14인)	1,000억원~
나	100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최소 5인)	100억원~
다	40인~	등록요건의 120% 이상(최소 2인)	10억원~
라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일반 회계법인(제한 없음)		

####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하여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함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가 있으며 감사인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함

12) 금융위원회, 「회계법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2022.7.18

## V. FAQ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경영진 참여 없는 별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지배구조 모범규준,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회계감사기준에서도 최소 분기 1회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 개최를 권고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6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해야 함

####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sup>1)</sup>

감사위원회는 최소 분기에 한번씩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합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활용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 260 A7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 참석 없는 감사인과의 만남을 양호한 지배원칙으로 삼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내부감사기구의 경영진 배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부를 핵심 지표로 삼고 있음<sup>2)</sup>
  -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는 대면/화상회의만 인정되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회의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 지원 조직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감사위원회 업무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음<sup>3)</sup>

1)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2016.7.18

2)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2.3.7

3)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2022.3

## V. FAQ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아젠다를 주요 업무 및 주체별로 정리하면  
 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부문, ② 경영진 부문, ③ 외부감사인 부문으로 구분됨

<표 1>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아젠다<sup>4)</sup>

구분	내용
회사의 재무제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보고 담당부서(회계팀, 재무팀 등) 구성원의 역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li> <li>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인지 여부와 외부감사법 준수 여부</li> </ul>
경영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이 회계 및 감사 이슈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지 여부</li> <li>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적용 등에 대해 경영진이 잘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li> <li>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여부</li> <li>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 고발 정책이 적절히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li> </ul>
외부감사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애로사항)</li> <li>회사 외부감사인의 관점에서 가장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그에 대한 회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인으로서의 확인 내용 및 결과</li> <li>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향후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과 그 이유</li> <li>경험있는 감사인원이 참여하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보수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li> <li>감사수행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사항 존재 여부, 재무제표에의 반영 여부, 미반영시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li> </ul>

4) 최중경, 감사위원회포럼 명예이사, 「외부감사인과 감사&감사위원회의 협업은 왜 중요한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기초연설, 2019.6.27

## V. FAQ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FY2022 기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 커뮤니케이션 평균 횟수는 3.6회로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83.7% 비중을 차지함
  - FY2022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일반상장법인의 77.9%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함
  - FY2022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일반상장법인의 40.7%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함<sup>5)</sup>
- FY2022 기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중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 논의 평균 횟수는 1.63회로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45.2%를 차지하는 주요 아젠다임

5)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데이터동향」, 창간호, 2022.7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mailto: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mailto: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mailto: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mailto:junoh@deloitte.com)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mailto: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